

일본의 할부판매법 개정안에서의 신용거래의 적정화

박 광 동 (한국법제연구원 부연구위원)

목 차

- I. 들어가며
- II. 피해의 현상
 - 1. 악질상법
 - 2. 정보누설
- III. 법규제의 현상과 문제점
 - 1. 악질상법
 - (1) 신용거래의 구조
 - (2) 개품할부구입 알선거래의 위험
 - (3) 할부판매법에 따르는 규제의 문제점
 - 2. 정보누설
- IV. 병역법전의 구성과 주요 내용
 - 1. 악질상법
 - (1) 행정 및 관련업계의 대처와 과제
 - (2) 개정의 개요
 - 2. 정보누설
- V. 향후의 과제

I. 들어가며

일본에서는 최근, 신용거래와 관련되는 악질상법 등의 소비자 피해가 큰 문제가 되고 있다. 이러한 피해는 고령자 등의 사회적 약자가 희생이 되는 것이 많거나, 피해가 고액이어서, 지불 때문에 다중채무에 빠지는 경우도 있는 것이 문제시되고 있다.

피해의 배경으로는 악질적인 판매업자의 존재 및 소비자에 대해 부적절한 신용을 공여하는 제휴 신용회사의 존재 때문이라고 말해지고 있다. 또한 신용카드의 정보누설로 인해, 인터넷 거래 등에 있어서의 신용의 부정이용 문제도 표면화되고 있다.

이러한 문제의 대응으로서 일본의 신용거래를 규제하는 「할부판매법」의 재검토가 행해져, 2008년 제169회 국회에 개정법안이 제출되었다. 또한 악질상법은 방문판매로 행해지는 경우가 많

기 때문에 할부판매법과 아울러, 방문판매 등의 특수한 판매형태를 규제하는 「특정상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특정 상거래법」)도 개정되었다.¹⁾

II. 피해의 현상

1. 악질상법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악질상법은, 독거(獨居)의 고령자에 대해, 방문판매의 형태로 「차례 차례 판매」를 해, 「과량판매」에 이르는 것이 전형적인 경우이다. 「차례차례 판매」란, 한 번 계약한 소비자에게 차례차례로 새로운 상품을 구입시키는 것이고, 「과량판매」는 필요 이상의 양의 상품을 강매하는 것을 말한다. 이러한 경우에는, 충분한 자금이 없어도 고액의 상품대금의 지불이 가능해지는, 신용계약이 이용되어지는 경우가 많다.²⁾ 2006년도에 일본방문판매협회가 접수한 방문판매에 관한 소비자 등으로부터의 상담 가운데, 지불방법으로서 신용에 의하는 것은, 지불방법이 판명된 계약필 사례의 63.7%를 차지하고 있다.³⁾ 또한, 신용을 이용한 거래의 평균 계약금액은 약 84만엔으로 현금지불의 경우의 배 이상이 되고 있다.

더욱이 특징적인 것은, 분쟁에 관련되는 것이 신용 중에서도 「개품할부구입 알선」이라고 하는 거래형태인 경우가 압도적으로 많은 점이다. 국민생활센터가 집계한 신용거래에 관련한 상담 건수의 약 8할이 이 거래와 관련되고 있다.

2. 정보누설

신용카드 본체나 신용카드 정보(카드번호·유효기간 등)를 본인 이외의 사람이 부정하게 취득해 상품의 구입 등을 실시하는 부정이용의 피해 총액은 2007년에 약 92억엔이다. 카드의 위조에 의한 피해는 업계의 대처 등에 의해 최근에는 감소하고 있지만, 신용카드 정보가 누설·부정 취득되어 생기는 인터넷 거래에서의 부정이용의 피해는 증가하는 경향에 있다.

III. 법규제의 현상과 문제점

1. 악질상법

악질상법을 조장하는 신용거래의 문제점으로서, 「개품할부구입 알선」이라고 하는 거래형태가 내포하는 구조적인 문제와 할부판매법의 규제 미비를 들 수 있다.

- 1) 주된 개정내용은, 과량판매의 계약을 계약 후 1년간은 해제가 가능하게 하는 것, 규제대상을 원칙적으로 모든 상품·서비스의 거래로 확대하는 것, 계약을 맺지 않는 의사를 표시한 소비자에게의 재권유의 금지 등이다.
- 2) 國民生活センター 『次々販賣のトラブル クレジットを利用した相談を中心に』 2007.12 .7, pp.1-4, 7.
- 3) 日本訪問販賣協會 『平成18(2006)年度訪問販賣110 番受付概要』 p.18.

(1) 신용거래의 구조

충분한 자금을 가지지 않는 소비자가 상품이나 서비스를 구입하는 경우에, 대금을 후불하거나, 직접 현금을 차입하거나 할 수 있는 구조를 「소비자 신용」이라고 한다. 이 중 상품 대금의 지불을 후일로 미루면서, 물건·서비스를 개입시킨 거래를 일반적으로 「신용」거래라고 부른다(직접적인 현금의 차입은 「소비자 금융」이다). 이 신용거래 가운데, 대금을 분할로 지불하는 「할부방식」만이 할부판매법으로 규제된다. 동법은 할부방식을, 2개월 이상의 기간에 걸쳐 3회 이상으로 분할해 지불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어(「할부 요건」), 1회 지불이나 2회 지불은 「비할부 방식」이라고 여겨져 규제를 받지 않는다.

할부판매법의 대상이 되는 할부방식의 거래는 관계하는 주체의 수 등에 의해 법률상 ㉠ 자사할부(할부판매), ㉡ 론(loan) 제휴판매, ㉢ 할부구입 알선으로 분류된다. ㉠ 자사할부는 소비자와 판매업자의 양자간의 계약이며, 판매업자 자신이 소비자에게 대금의 할부를 인정하는 것이다. 이것에 대해 ㉡ 론 제휴판매와 ㉢ 할부구입 알선은 판매업자와 소비자 및 금융기관 또는 신용회사가 관계한다. ㉡ 론 제휴판매는 판매업자를 보증인으로서 소비자가 금융기관으로부터 대금을 차입해 후일 금융기관에 분할변제 한다. ㉢ 할부구입 알선은 신용회사가 소비자에 대신해 판매

업자에게 대금을 일괄로 지불해, 소비자가 후일 신용회사에 할부로 변제하는 구조이다. 소비자에게 있어 편리성이 높고, 사업자에 있어서도 판매와 신용사무를 분업할 수 있는 등의 메리트가 있기 때문에, 할부방식 중에서는 ㉢ 할부구입 알선이 가장 많이 행해지고 있다.⁴⁾

신용거래는 여신이나 변제의 방법에 의해 3개로 분류된다. 변제능력 등에 관한 신용조사를 거쳐 미리 소비자에게 부여된 신용카드 등을 이용하는 ① 종합 방식 및 ② 리볼빙 방식과 신용카드 등은 이용하지 않고, 상품구입시에 신용조사를 거쳐 신용계약을 맺는 ③ 개품방식이다.

최근에 신용관련 문제로 많이 이용되고 있는 「개품할부구입 알선」은, ③ 개품방식의 ㉢ 할부구입 알선이다. 즉, 개별의 상품을 구입할 때에, 신용회사가 소비자의 신용조사를 거쳐 판매업자에 일괄로 대금을 대신 지불해, 소비자로부터 분할로 변제를 받는 구조이며, 「계약서형 신용」이라고도 불린다. 신용카드를 사용하는 종합방식 등과 달리, 미리 이용한도액이 설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통상 자동차·포목·귀금속 등의 고액상품의 구입에 이용된다.

(2) 개품할부구입 알선거래의 위험

개품할부 구입알선은 구조적으로 분쟁을 일으키기 쉬운 성질의 거래형태이다.

4) 角田美穂子「擴大するクレジット取引と消費者問題」『月刊日本行政』413号 2007.4 p.34.

1) 계약절차에 관한 문제

제품할부 구입알선에서는 소비자와 판매업자 간의 「매매계약」, 판매업자와 신용회사 간의 「가맹점 계약」, 신용회사와 소비자 사이의 「신용계약」 등의 3개의 계약이 존재한다.

그러나 통상, 신용회사와 소비자 사이의 신용계약 절차는 상품을 판매할 때에 판매업자가 대행하여 실시하기 때문에 신용회사와 소비자의 직접적인 접촉은 없다. 신용회사는 현장에 동석하지 않기 때문에 매매 및 신용계약이 판매업자의 악질적인 권유의 결과로 된 부적정한 것인가 등의 파악이 달라진다. 또, 신용회사에 의한 소비자의 신용조사 등도 정확성이 결여된 경향도 있다. 더욱이 제품방식으로는 신용카드의 이용 한도액에 상응하는 양적인 이용의 범위가 미리 설정되지 않아서, 소비자의 변제능력을 넘는 과잉 여신이 발생하기 쉽다.

2) 사업자의 적정거래에의 인센티브 부족

할부구입 알선거래에서는 판매업자는 소비자가 계약을 체결만 하면, 즉시 신용회사로부터의 지불에 의해 상품대금을 회수할 수 있기 때문에, 소비자의 지불능력 등을 고려하지 않고, 강행적인 권유판매를 하기 쉽다고 여겨지고 있다. 일방의 신용회사도 판매업자가 계약을 취하면 취할수록 수수료 수입이 예상되고, 또한, 매매계약이 나중에 해제되었을 경우 등도, 소비자로부터 이

미 지불된 대금(기불금)에 대해서는 반환이 요구되지 않고, 부적정한 신용의 신청을 받아들이거나, 악질적인 가맹판매업자와도 가맹점 계약을 계속하기 쉽다는 점이 지적되고 있다.⁵⁾

(3) 할부판매법에 따르는 규제의 문제점

이러한 제품할부 구입알선 거래 자체의 문제에 더해 이것을 규제하는 할부판매법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문제점이 지적되어 왔다.

1) 제품할부 구입알선 거래 규제의 문제점

할부판매법은 할부방식의 신용거래의 적정화를 목적으로 하는 법률로 신용회사의 개업 규제 등의 행정규제나 사업자에게 계약시의 서면교부 등을 의무화 하는 행위규제, 사업자·소비자 사이의 거래 룰을 정하는 민사 룰 등이 포함되어 있다. 제품할부구입 알선거래 규제의 고유한 문제점으로서 아래와 같은 것을 들 수 있다.

가. 참가규제의 부재(행정규제)

종합방식 및 리볼빙(revolving) 방식의 할부구입 알선을 취급하는 신용회사는 경제산업성에 등록할 필요가 있지만 제품할부구입 알선의 경우에는 등록의무는 없고, 참가가 규제되지 않는다.

나. 계약서면 교부의무의 부재(행위규제)

계약시에 소비자에게로의 신용계약서면의 교부는 판매업자에게는 의무지워지고 있으나, 신

5) http://www.nichibenren.or.jp/ja/publication/booklet/data/credit_qa.pdf.

용회사에게는 의무가 없기 때문에, 소비자가 신용계약에 대해 잘 이해하지 못하고 계약해버리는 일이 있다. 또, 신용회사에 의한 판매업자의 적정한 권유판매의 확인도 불충분한 경향이 있다.

2) 할부구입 알선거래 규제의 과제

할부구입 알선거래 일반의 규제에 관한 문제점 중 공통된 사항으로서 다음과 같은 것이 있다.

가. 부적정·과잉여신의 방지의무의 부재
판매업자의 악질적인 권유행위를 배제하는 「부적정 여신의 방지」가, 신용회사에 의무지워지지 않았다. 또, 소비자의 신용조사를 정확하게 실시해, 지불능력을 넘은 여신을 실시하지 않게 하는 「과잉여신의 방지」도 훈시규정에 머무르고 있다.

나. 기불금의 반환청구의 불가능(민사률)
할부구입 알선에 대해서는, 매매계약이 해제되었을 경우나, 판매업자가 소비자에게 상품을 인도하지 않는 경우 등에도 신용계약은 존속한다. 소비자는 신용회사에 대해서 아직 변제하고 있지 않는 대금(미불금)의 지불을 거절할 수가 있다. 신용회사에 이미 지불한 기불금에 대해서는, 반환을 요구하는 것이 곤란하다.

다. 보호대상 범위의 협소
할부판매법은 지정제를 채택하고 있어, 정령으로 정해진, 건강식품·귀금속 등의 상품이

나, 에스테틱(aesthetic)·어학의 교수 등의 서비스·권리의 거래가 규제대상이 된다. 그 외의 상품·서비스·권리 및 전술의 할부요건을 채우지 않은 1·2회 지불의 거래는, 법의 대상이 되지 않고, 소비자는 원칙적으로 신용회사에 대한 미불금의 지불의 거절 등을 실시할 수 없다.

2. 정보누설

카드정보 누설문제에 대응하는 현행법으로서, 「형법」 및 「개인정보의 보호에 관한 법률」, 「개인정보보호법」 등이 있다. 그러나 카드번호와 유효기간만 알면, 인터넷상에 있어 신용거래가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형법이나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르는 규제에서는, 카드 번호·유효기간 만의 정보는, 통상 보호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또, 개인정보보호법에는 개인정보 데이터베이스 등을 사업에 이용하는 개인정보취급 사업자에 대한 권고 등에 대해 규정되고 있지만, 개인정보 취급사업자나 종업원 개인의 누설행위 등을 직접적으로 처벌할 수 있는 명문규정은 존재하지 않는다.⁶⁾

IV. 법개정의 개요

1. 악질상법

(1) 행정 및 관련업계의 대처와 과제
이러한 현상에 대해, 정부나 관련 업계는 지금

6) 経済産業省産業構造審議會割賦販買分科會基本問題小委員會『報告書』2007.12.10, p.13.

까지도 대책을 강구해 왔다. 신용업계를 소관하는 경제산업성은, 과거 20년 이상 신용관련의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에 통달을 제시해, 가맹점 계약을 맺는 판매업자의 실태파악이나 소비자의 계약의사의 확인, 소비자의 불평에의 적절한 대응 등을 철저히 하도록 신용회사를 지도하고 있다.

또, 전국신용판매협회는 2006년의 악질방문판매 사기문제를 계기로, 개품할부구입 알선거래의 적정화를 향한 대책을 강화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개품할부구입 알선에 있어서의 적정한 여신에 관한 지침을 책정해, 가맹점계약을 맺은 판매업자의 총 점검을 실시했다. 또한 특정상거래법의 대상인 방문판매 등에 있어서의 개품할부구입 알선에 대해서는, 신용의 계약서면이 불비한 경우에는 여신을 실시하지 않는 것이나, 연금 이외의 수입이나 자산이 없는 고령자와는 원칙적으로 계약을 하지 않는 것으로 정해 업종·상품별로 적정한 여신을 위한 가이드 라인을 책정하고 있다.

전국신용판매협회의 총점검에 의해, 판매업자 1,071개사가 거래정지·개선요청 등의 시정 대상이 되는 등,⁷⁾ 대책에 의한 개선점도 보여지지만, 통달이나 자주규제는 이것에 위반해도 벌칙의 대상이 되지 않는 것 등의 이유로, 근본적인 문제해결의 수단으로 보기 어렵다. 또, 업계단체

의 자주규제는 회원기업만이 대상이 되어, 그 이외에는 효과가 미치지 않다. 전국신용판매협회의 회원기업이 현재 약 40개사인 한편, 개품할부구입 알선을 취급하는 사업자는 300개사 정도 존재한다고 말해지고 있다. 이러한 사업자는, 신용카드를 이용하는 종합할부 구입 알선 등은 실시하지 않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경제산업성의 등록의무도 없다.

이로 인해 악질상법의 피해가 끊이지 않는 상황이 계속되고 있어, 법조계나 소비자단체 등은 할부판매법의 문제점을 지적하여 개선을 요구하는 의견서가 다수 발표하였다.⁸⁾

(2) 개정의 개요

1) 검토의 경위

이러한 상황에서 2006년, 경제산업성 산업구조심의회 할부판매 분과회 기본문제 소위원회(이하「기본문제 소위원회」)를 두어, 할부판매법의 개정을 위한 신용거래 과제의 검토가 개시되었다. 기본문제 소위원회는 동년 6월에「신용거래와 관련되는 과제와 논점정리에 대하여」를 공표해, 관련제도의 재검토가 시급하다고 발표했다. 2007년 2월 이후에는, 법개정을 염두에 두고 구체적인 검토가 이루어져 중간 정리를 거쳐, 최종보고서가 정리되었다.⁹⁾

7) 全國信販協會『個品割賦における取引の健全化に向けた対応について』2007.9.

8) 日本弁護士連合會『割賦販買法の抜本的改正を求める意見書』2006.7.20.; 同『クレジット過剰与信を禁止する法改正を求める意見書』2007.3.16.; 日本司法書士會連合會『割賦販買法の改正を求める意見書』2006.12.14.; 主婦連合會『割賦販買法の改正を求める要望書』2006.5.12.; (社)日本消費生活アドバイザー・コンサルタント協會『クレジット取引に係る要望・意見書』2007.1.5. 等.

개정 내용은 판매업자의 악질적인 행위에 관해서, 가맹점 계약을 맺는 신용회사도 책임을 진다는 것을 기본으로, 분쟁이 많은 방문판매 등에 있어서의 개품할부구입 알선거래의 규제 등을 큰 폭으로 강화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2) 할부판매법 개정의 골자

개정 주된 내용(①~⑧)과 대상이 되는 거래(a, b, c, d)는 이하와 같다.

가. 행정규제의 강화

① 참가규제의 도입(⇒ a. 개품할부구입 알선)

악질적인 사업자를 배제하기 위해서, 개품할부구입 알선을 취급하는 신용회사에 대해서도, 경제산업성에의 등록을 의무화한다. 신용회사가 위법한 행위를 했을 경우에는 등록이 취소되어 그로 인하여 무등록 영업 등이 된 경우에는 벌칙이 적용된다.

② 행정감독 규정의 강화(⇒ b. 개품할부구입 알선)

경제산업대신은, ①에 의해 등록된 개품할부구입 알선업자에 대한, 보고징수·출입검사를 실시해, 업무개선명령·업무정지명령을 발령할 수가 있다.

나. 행위규제의 강화

③ 계약서면 교부의 의무부여(⇒ c. 방문판매 등에 있어서의 개품할부구입 알선)

방문판매 등에 있어서의 개품할부구입 알선에 대해, 신용계약 시에 일정 사항을 기재한 계약

서면을 소비자에게 교부하는 것을, 신용회사에 의무화 한다.

다. 부적정·과잉여신방지 의무의 도입

④ 부적정 여신방지의 의무부여(⇒ c. 방문판매 등에 있어서의 개품할부구입 알선)

방문판매 등에 있어서의 개품할부구입 알선에 관해서, 신용회사에 부당한 판매권유가 이루어지지 않는가 등을 확인하는 것을 의무화 한다. 그 결과, 부적정한 판매라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신용계약을 맺어서는 안되는 것으로 한다.

⑤ 과잉여신 방지의 의무부여(⇒ a. 할부구입 알선)

할부구입 알선을 취급하는 신용회사는 과잉 여신방지를 위해, 소비자의 지불능력 등에 대해 조사할 의무를 지고, 지불능력을 넘는 경우에는 신용카드의 교부나 개품할부구입 알선의 신용계약의 체결 등을 실시해서는 안 되는 것으로 한다. 또한 이 조사는, 개인신용정보기관에 조회되는 것으로 그 실행에 있어서 엄격함이 요구된다. 이 조치에 수반해, 개인신용정보의 보호의 중요성이 보다 높아지기 때문에, 개인신용정보기관에 대한 국가의 지정·감독조치도 도입된다.

라. 민사률의 정비

⑥ 쿨링오프(cooling-off) 제도의 도입(⇒ c. 방문판매 등에 있어서의 개품할부구입 알선)

방문판매 등에 대해 개품할부구입 알선이 이용되었을 경우, 계약 후 일정기간 내에는 매매계

9) <http://www.meti.go.jp/committee/materials/downloadfiles/g70827a08j.pdf>.

약과 함께 신용계약도 쿨링 오프(cooling-off) 할 수 있게 한다.

⑦ 기불금의 반환청구를 인정(⇒ d. c로 부적정한 권 유판매를 했을 경우 등)

개품할부구입 알선을 이용한 방문판매 등에 대해, 판매업자가 부적정한 권유를 실시하고 있었을 경우, 신용계약의 취소를 가능하게 한다. 계약이 취소되면, 소비자는 이미 지불한 대금의 반환을 신용회사에 청구할 수가 있다. 또, 이번의 특정상거래법 개정으로 과량판매계약의 해제권이 신설되는데 발맞추어, 개품할부구입 알선을 이용한 방문판매 등에 대해 과량판매를 했을 경우에도, 기불금의 반환청구를 가능하게 한다.

마. 법의 대상범위의 확대

⑧ 대상거래의 확대(⇒ a. 할부구입 알선)

할부요건이 재검토되어 2개월 이상 후의 1회 지불이나, 2회 지불의 구입알선거래도, 법의 규제대상이 된다. 또, 지정제는 폐지되어 할부구입알선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모든 상품과 서비스의 거래가 규제대상이 된다.

또한 이 외에도, 신용업계의 자주규제 기능 및 정부의 집행체제도 강화된다. 관련 업계의 자주규제단체가 법정화되어 판매업자에 관한 정보의 교환제도 등, 법의 준수에 이바지하는 기능의 충실이 도모되어 졌다. 자주규제단체에는 지도·권고기능을 부여해, 경제산업성이 감독·지도를 실시한다. 또, 경제산업성은 도도부현과

의 법집행사무에 있어서의 제휴나, 특정 상거래법의 집행·운용과의 제휴도 추진하고 있다.

2. 정보누설

신용분야만을 대상으로 한 개인정보보호 규제는 없고, 개인정보보호법 성립시에 중의원, 참의원 양원의 부대결의는, 금융·신용분야의 개인정보보호에 대해 각별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하고 있다.¹⁰⁾ 경제산업성은 2004년에 신용분야에 있어서 「경제산업분야 중 신용분야에 있어서의 개인정보보호 가이드라인」을 책정해 신용업계에서도 규정이 정해져 있다. 그러나, 인터넷 거래의 진전에 수반해 정보누설 대책은 한층 더 중요도를 더하고 있어, 보다 실효성이 있는 대책을 강구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 때문에, 악질상법 대책과 아울러 기본문제 소위원회에서 검토가 진행되어 이번의 할부판매법의 개정에서, 신용카드 정보에 관한 새로운 보호규정이 도입되게 되었다.

규제대상이 되는 정보내용은 카드번호 등이며, 이것을 누설 한 신용회사, 종업원, 퇴직자, 업무 위탁처, 또한 외부의 정보부정취득자의 측에도 벌칙(징역 또는 벌금)이 적용될 전망이다. 또, 새롭게 정해지는 카드정보누설방지를 위한 안전관리기준을 준수하지 않는 사업자에게, 업무개선 명령 등을 하는 것이 가능하도록 규정이 생기게 된다.

10) 衆議院個人情報の保護に関する特別委員會議録 第11号 平成15年4月25日 p.17.; 參議院個人情報の保護に関する特別委員會議録 第9号 平成15年5月21日 p.22.

V. 향후의 과제

일본의 이번의 개정에서는 지금까지 특히 강하게 요청되고 있던 신용회사에의 부적정·과잉여신방지의 의무부여나 기불금의 반환청구의 용인이 실현될 전망이다, 재검토의 내용이나 향후의 운용에 관해서, 첫째, 과잉여신 방지의 판단기준의 문제로, 새롭게 의무지워지는 과잉여신의 방지에 대해서는 과잉여신에 해당되는지 아닌지의 판단 기준이 가이드 라인으로 정해질 전망이다. 이것에 대해, 기준을 보다 명확하게 하기 위해, 여신이 가능한 액을 연수입의 일정비율 이하로 하는 등의 「총량규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하는 의견과 일률적인 수치 기준의 설치는 신용거래를 위축시킨다고 하는 의견이 대립하고 있다.¹¹⁾

둘째, 기불금의 반환청구의 대상범위의 문제로, 소비자가 신용회사와의 계약을 취소해, 기불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은, 특정상거래법의 대상인 방문판매 등으로 개품할부구입 알선이 이용되었을 때에, 판매업자가 계약에 관한 허위의 설명 등의 부적정한 권유를 실시했을 경우에 한정되어 있다. 이에 대해, 특정상거래법의 대상이 아닌, 점포에 있어서의 판매 등도 대상으

로 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다. 그러나, 경제산업성은 점포판매와 같이 일반적인 거래를 규제하면, 소비에 악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고 하여 신중한 자세를 취하고 있다고 말해지고 있다.¹²⁾ 또, 판매업자가 도산했을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반환청구의 대상이 되지 않는 점도 문제로 되어 있다.¹³⁾

일본의 금번 할부판매법의 재검토는, 지금까지 지적되어 온 법의 문제점을 거의 망라하는 것이며, 악질상법 억제 효과 기대된다. 신용업계에서는, 이미 개정 앞서 악질적인 판매업자와의 가맹점계약을 해제하는 움직임도 보여지고 있다.¹⁴⁾ 한편, 업계에서는 과잉여신방지가 의무화되는 것에 의해, 신용 사용이 어려워져, 소비자의 편리성을 해친다고 하는 의견 또는 비즈니스 모델의 재검토를 촉구 당하는 것의 불안의 소리도 있다.

경제산업성도 최근에, 산업육성 중심의 자세로부터 소비자보호를 중시하는 방침으로 전환하고 있다고 말해지고 있다. 이러한 움직임의 근간에는, 소비자와 기업을 상반되는 것이라고 파악해 일방의 보호에 주력 하는 것보다도, 양자의 관계를 개선해 쌍방이 이익을 얻는 상태를 구축해야 하는 것을 전제로 한 것이다.

11) 「信販會社規制が焦点」『東京新聞』2008.1.10.

12) 「クレジット契約 規制厳しく」『日本經濟新聞』2007.12.30.

13) 「信販の法的責任強化」『毎日新聞』2007.11.30.

14) 「信販大手 打ち切り加速 割賦販賣法改正にらむ」『日本經濟新聞』2007.11.29.